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 1-1 | 기관의 장 |
|-----|-------|
| 선 | |
| 람 | |

제1호 2016. 1. 4(월)

공 고

 \bigcirc 남원시 공고 제 2015 - 1581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회 | | | | | |
|---|--|--|--|--|--|
| 람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5 - 1581호

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 남 워 시 장

남원시 흉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 「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 등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시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15)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063-620-64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2. .

제 출 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산 림 과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 과제」, 국무조정실 주관「11대분야 지방규제 개선 대상」등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안 제2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2. . ~ 2016. 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따라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 에따라"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 제2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를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호관리"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3호 중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을 ""군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어른"이라 함은"을 ""어른"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시

- 제3조제6호 중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을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입장료"라 함은"을 ""입장료"라"으로, "자로부터"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시설 사용료"라 함은"을 ""시설 사용료"라 함은"을 ""시설 사용료"라 함은"을 ""지설 사용료"라 함은"을 ""주차장"이라 함은 "을 ""주차장"이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이라 함은"을 ""이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방갈로"라 함은"을 방갈로"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오토캠프장"이라 함은"을 ""오토캠프장"이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및 평상"이라 함은"을 "및 평상"이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라 함은"을 ""라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휴양림"이라 함은"을 ""휴양림"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 **제4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로 하고, "저해"를 "방해"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일용직 2인"을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나의 경우에"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개시"를 "시작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억제한다."를 "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택벌로 한다."를 "골라베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육림을 철저히 한다."를 "육림 철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때에는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다."를 "경우 조경수를 식재"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활용할 수 있다."를 "활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 제한다.

시

- 제10조제1항 중 "가해자로 하여금"을 "가해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를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 리·운영자에게"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 제11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12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자"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 긴급을 요하는"을 "다만, 긴급한"으로, "위탁자"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자는"을 "시장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 제16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기재되지 아니한"을 "없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한다.

시

- 제17조제2항제1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를 "3 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 경우"로, "50%할인"을 "50퍼센트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 제18조제2항 중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예정일 전일"을 "해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로, "사용개시예정일 전전일"을 "사용예정일 전전날"로, "전일"을 "전날"로, "50%"를 "50퍼센트"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용을 하려는"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중 "입장료"를 "휴양림의 입장료"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시장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에 관하여는"을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는 관련"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시설"을 "시설"로, "소요된"을 "드는"으로, "참작하여 그 요율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로 한다.
- 제21조 중 "관리·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을 "관리·운영자는"으로 한다.
- 제22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 휴양림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3.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에 대하여는"을 "주민은"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관 리 인 원(제5조 관련)

| 관리내용 | 배 치 인 원 | 비고 |
|------------------------|---------|----|
| 계 | 4명 | |
| 휴양림운영관리(현장책임자) | 1명 | |
| 재산 및 수입금 관리, 매표소 운영 | 1명 | |
| 시설물 보수 관리 | 1명 | |
| 주차 및 쓰레기 수거 | 1명 | |

시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 | 제1조(목적) |
| 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및 |
|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시 |
| 성한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 |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 |
| (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 | 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 에 따 |
| 리・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의 | 라 |
|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입장료 | |
| 및 시설사용료 <u>징수에 관하여</u> | <u>징수에</u>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
| 로 한다. | |
| 제2조(적용범위) <u>남원시</u> 지역에 | 제2조(적용범위) <u>남원시(이하 "</u> |
| 조성된 휴양림중 남원시장(이 | <u>시"라 한다)</u> 지역 |
| 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 |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u>한</u> | <u>ট</u> |
| 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 | 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 |
| <u>리에 관하여</u> 는 다른 법령에 특 | 호관리 |
|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 |
|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 |
| 따른다.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 제3조(정의) |
| 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 뜻은 |
| 1. <u>"어린이"라 함은</u> 7세 이상 1 | 1. <u>"어린이"란</u> |
| 2세 이하인 <u>자를</u> 말한다. | <u>사람을</u> |
| <u>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u> |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 |
| 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 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

| 3 | | ". | 군 | 인 | " (| ۶) i | 라 | 함. | 은 | 저 | 복 | 을 | 입 |
|---|-----|----------|----|----|----------|----------|------------|----|---|----|------|----|---|
| | 은 | <u>-</u> | 붓 | 上人 | ŀŧ | <u> </u> | (٥ | 하' | 인 | ਹ | '인 | (전 | 투 |
| | 먖 |] | 의 | 무 | - た | 결 | <u>}</u> , | 상 | 근 | ф। | a) (| 격, | 공 |
| | Ō. |] - | ユ. | 무. | <u>Q</u> | 원 | 을 | 巫 | 함 | 한1 | 다) | 을 | 말 |
| | ਰੁੱ | ŀτ | 十. | | | | | | | | | | |

-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u>자를</u> 말한다.
- 5.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6. <u>"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u>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7.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u>자로부터</u>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8. "시설 사용료"라 함은 별표
 4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u>자로</u>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
 다.
- 9. <u>"주차장"이라 함은</u>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 10. "숲속의 집<u>"이라 함은</u> 휴양 10. -----<u>"이란</u> ------

| 3. <u>"군인"이란</u> |
|----------------------------------|
| |
| 4. "어른"이란 |
| |
| 라을 말한다. |
| 6. <u>"단체"란 20명 이상 같은</u> |
| 7. <u>"입장료"란</u> |
| <u>사람에게</u> |
| 8. <u>"시설 사용료"란</u> <u>사람</u> |
| 에게 |
| 9. <u>"주차장"이란</u> |
| · |

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 박시설을 말한다.

- 11. "숲속의 <u>방갈로"라 함은</u>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로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 12. <u>"오토캠프장"이라 함은</u> 휴양림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야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 13. "야영장 <u>및 평상"이라 함은</u> 야영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휴양림 안에 마련해 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 14. "임간수런장"이라 함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에 대한이해 증진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 15. "휴양림 관리·운영자<u>"라</u> 함은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 |
|----------------------|
| 11 <u>방갈로"란</u> |
| |
| |
| |
| |
| 12. "오토캠프장"이란 |
| |
| |
| |
| |
| 13 및 평상"이란 |
| |
| |
| |
| 14. <u>"임간수련장"이란</u> |
| |
| |
| |
| |
| 1E "a). |
| 15 <u>"</u> 란 |
| |
| |

| 1 | 6. | "휴 | 양 | 림 | 현경 | } 책 | 임기 | 아 <u>"</u> | 라 | ζ | 함 |
|---|----------|----------|----|------------|----|-----|----|------------|----------------|----------|---------|
| | <u>은</u> | 휴 | 양립 | | 관리 | • - | 운영 | 자 | 의 | Ţ | 녕 |
| | 을 | 받 | 아 | 휴여 | 걍림 | 인 | 내, | ,) | 시설 | 릴 | 물 |
| | 관: | 리, | 입 | 장 | 豆. | 및 | 시 | 설계 | \ } | <u>}</u> | 크 다_ |
| | 징: | 수 | 등 | 휴여 | 걍림 | 관 | :리 | • - 1 | 우 ợ | वे द | 겁 |
| | 무 | 케 | 직 | 접 | 종 | 아 ㅎ | 누는 | - | 공투 | 7 9 | 원 |
| | 또: | <u> </u> | 고용 | <u>}</u> • | 을 | 말 | 하디 | ŀ . | | | |

17. <u>"휴양림"이라 함은</u>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u>법률」 제</u>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으로 지정・고시되어 휴양시 설을 설치한 남원시 흥부골자 연휴양림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휴양 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1. ~3. (생략)
- 4. 이용자에 <u>의한</u> 산림훼손 방 지
- 5. ~ 7. (생략)
- 8. <u>기타</u>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u>저해</u>하는 행위의 예방

② (생략)

제5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의 효 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 표 1과 같이 관리인을 배치할

| 16 <u>"란</u> |
|-------------------------|
| |
| |
| |
| |
| 17. "휴양림"이란 |
| <u>법률」(이하</u> |
|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 |
| <u> </u> |
| |
|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4 따른 |
| 5. ~ 7. (현행과 같음) |
| 8. <u>그 밖에</u> |
| <u>방해</u> ② (현행과 같음) |
| 제5조(관리인 등) ① |
| |
| |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u>일용직</u> <u>2인</u>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시

② (생략)

제6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 및 휴양림 입구 입간판을 이용하여 입장금지 개시 15일전에 이용불가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u>기타</u> 입장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7조(휴양림의 산림경영) 휴양 림내 산림시업은 별표 2(산림시 업 계획)에 <u>의하되</u>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 1. 특별히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벌채시업을 가급적 <u>억</u> 제한다.
- 2. 벌채시업은 가급적 <u>택벌로</u> <u>한다.</u>
- 미립목지 및 개벌적지 조림
 과 천연림 보존 등 육림을 철 저히 한다.

| <u>기간제근로자 2명</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 |
| え])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 |
| <u>시작일</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4. <u>그 밖에</u> |
| |
| 제7조(휴양림의 산림경영) |
| |
| <u>따르되</u> |
| . |
| 1 |
| <u>억제</u> |
| |
| 2 골라베기 |
| |
| 3 |
| <u>육림 철저</u> |
| |

| 4. 휴양/ | 시설 주 | 변에 | 경관 | 보 | 관 |
|--------|---------------|-----|-----|-----|---|
| 을 위하 | h여 필 <u>.</u> | 요한 | 때에는 | = 2 | 조 |
| 경수를 | 식재할 | 수 9 | 있다. | | |

5.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순환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 제9조 삭 제 장) 휴양림 관리 · 운영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 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
- 3. 위험물 및 악취물을 반입하 거나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 을 방치하는 자
-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 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조 수류를 포획하는 자
- 5. 기타 휴양림 관리 ·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 · 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 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 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

| 4 | |
|-----------|-----------|
| | 경우 조경수를 식 |
| <u> 개</u> | |
| 5 | |
| | 활용 |

| 제10조 | (손해배 | 상 등) | ① | |
|------|------|------|---|--|
| | | | | |
| | | | | |
| | | | | |

에는 <u>가해자로 하여금</u> 원상복구 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 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 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u>자는</u> 정당한 사유가 <u>없는 한</u> 그 조치 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 경영림 관리·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 이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 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u>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수 있다.

| | <u>가해자에게</u> |
|--------------|--|
| | |
| <u>한</u> | ② <u>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u> - <u>영자에게</u> <u>사람은</u> <u>없으면</u> |
| | 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10조에 |
| | 구 |
| | 2조(위탁관리) 법 시행령 제10조 |
| | —————————————————————————————————————— |

제13조(위탁계약) 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명시하여야</u> 한다. 1. ~ 4. (생 략)

제15조(수탁 휴양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무를 다하고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 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u>위탁자</u>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시설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수탁 산림의 시업을 <u>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u> 한다. <u>다만, 긴급을 요하는</u>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u>위탁자</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u>위탁자는</u> 위탁재산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행정여건이 허락하는 <u>범위안</u>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1. ~ 3. (생략)

| 제13조(위탁계약) |
|--|
| <u>적어야</u>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 휴양림의 관리) ① - |
| |
| <u>시장</u>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
| <u>시장</u> |
| · ④ <u>시장은</u> |
| <u>범위</u> |

1. ~ 3. (현행과 같음)

시

|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 제1 |
|----------------------------|----------|
| 징수) 수탁자는 <u>「산림문화·</u> | 7 |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 별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 |
| 의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 |
|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 |
|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 제1 |
|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 | |
| 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 | |
| 에 <u>기재되지 아니한</u> 시설은 별 | _ |
| 표 4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 |
| 시설의 사용료에 <u>의한다</u> . | |
|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 | 2 |
|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 |
|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 | |
| 다. 다만, 성수기에는 그러하 | <u> </u> |
| 지 아니하다. | |
|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u>2</u> | 1 |
| <u>0%</u> 할인 | |
| 2. 5일 이상 시설물(숙박시설 | 2 |
| 포함) 장기 사용시 : <u>30%</u> 할인 | |
| 3.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 | 3 |
| 장료 및 주차료의 <u>50% 할인</u> | |
| ③ 제2항에 <u>의하여</u> 입장료 및 | 3 |
|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 | |
|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 | |

| 제16 | J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
|-----------|---|
| 징 | 수) <u>시장의 승인을</u> |
| <u> 빈</u> | <u>-0}</u> |
| | |
| | |
| | |
| | |
| 제17 | '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
| 1 |) |
| | |
| _ | 없는 |
| | |
| | 따른다. |
| |) |
| | |
| | 다만, 성 |
| 수 | ·기에는 예외로 한다. |
| | <u>, , , , , , , , , , , , , , , , , , , </u> |
| 1. | 20퍼 |
| | <u>== -</u> 센트 |
| 2. | |
| | 30퍼센트 |
| 3. | |
| 0. | 50퍼센트 할인 |
| (3) | |
| <u></u> | , <u> </u> |
| | |
| | |

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유치원·초·중·고·대학생들이 20명 이상 단체로 휴양림 이용시 할인기간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50%까지 할인할 수있다.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생략)

- ② 제1항의 예약을 <u>해약하고자</u> <u>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예정일 전</u> 일까지 하여야 하며, <u>사용개시</u> 예정일 전전일까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u>전일</u>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한다.
-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에 한하여 광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은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 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사용료 등을 협의 · 결정한다.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매함을 원

| 4 |
|----------------------|
| |
| <u>50</u> |
| <u>퍼센트</u> |
| |
|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현행과 |
| 같음) |
| ② 해약할 경우 |
| 에는 사용예정일 전날 |
| <u>사용예정일</u> |
| <u>전전날</u> |
| <u>전날</u> |
| <u>50퍼센트</u> |
|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
| 최.저 귀 서 |
| <u>한정하여</u> |
|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 |
| 용을 하려는 |
| |
| ·. |
|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 |
| 수) ① <u>휴양림의</u> |
| |
| |

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 장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다만, 기타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참작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 관리 · 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 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 금 징수 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u>다음</u> 각 | 제22조(입장료 감면) ① <u>시장은</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u>대하여는</u>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 1. 국빈 및 그 수행자
 -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3. 6세이하인 <u>자 및 65세이상인</u> 자

| 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 |
|-------------------|
| 용료 징수는 관련 |
| |
| <u>따른다</u> |
| - <u>시설</u> |
| 드는 |
| 고려하여 적정하게 |
| . |
|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
| <u>관리 · 운영자는</u> |
| |
| |
| ·· |

- <u>다음</u> ----- <u>경</u> 우에는 휴양림의 ---------.
 - 1.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 족구성원
 - 3.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 중인 상이군경

시

-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u>자</u>
- 6. 장애인
- 7. 국가유공자
- 8. 삭제
- ② 휴양림과 연접된 지역인 남 원시 인월면 인월리(월평, 구인 월, 용계마을) 거주 <u>주민에 대</u> <u>하여는</u>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 다.
- 제23조(세입조치) 시에서 관리· 저 운영하는 휴양림 수입은 <u>남원시</u>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시에는 별도 계약에 <u>의</u> 한다.

| <u>4.</u> | _ | Z E | 밖에 | 시건 | 상이 | 공익 | 등 | -의 |
|-----------|----------|-----|-------------|----------|----|-----|----|----------|
| Ĩ | 락즈 | ដ을 | · 위 | 하여 | 필요 | 2하디 | -고 | <u>인</u> |
| フ ー | 성 한 | 누는 | · 경- | <u> </u> | | | | |
| <스 | <u> </u> | 제: | <u>></u> | | | | | |
| | | | | | | | | |

<삭 제>

| <삭 제> |
|----------------|
| 8 |
| ② |
| |
| <u>주민은</u> |
| |
| |
| 세23조(세입조치) |
| <u>\lambda</u> |
| |
| 따른다.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이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보

| | | | | 이 | 겨 | . 제 | 幸 | · 人 |] | | | |
|------------|--------|------|-----|---|----------|----------|-----|-----|---|-----|--------------------|-------|
| | | | | 1 | | <u> </u> | | | * | 1 | ر. لم م ال لم م | -1 -1 |
| 1. 의견제출 목록 | | | | | ·무골거·개정인 | | -양덤 | 관리 | 빛 | 운영에 | 반한 | |
| 2 | 2. 제출자 | 성명(명 | (청) | | | | | | | | | |
| ۵. | /개원/기 | | 소 | | | | | | | | | |
| 3. | 의 | 견 | | | | | | | | | | |
| 4. | 기 | 타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남원시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